

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 <신설 2023. 12. 29.>  
[시행일: 2025. 1. 1.] 통합관리사업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중소기업자인 경우

##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신청인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 )		
통합환경 관리인	구분 [ ] 통합환경총괄관리자 [ ] 통합환경일반관리자		
	해임일 또는 퇴직일 년 월 일		
	연장 기간(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기간을 적습니다)		
	연장 사유		
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2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환경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통합환경관리인의 해임 또는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### 처리절차

